

회계학개론

※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(회계기간)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. 단,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(年)이자율이며,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.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.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.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.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.

1. 유통업을 영위하는 (주)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(주)세무의 회계처리가 20×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 (단,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.)

- 20×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₩400,000이며,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₩300,000이다.
- 20×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₩200,000이다.
- 20×1년 4월 1일 퇴직종업원에게 ₩120,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.
- 20×1년 7월 1일 현금 ₩160,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.
- 20×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며, 20×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.
- 순확정급여부채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%로 변동이 없다.

- ① ₩193,000 감소 ② ₩198,000 감소 ③ ₩200,000 감소
④ ₩202,000 감소 ⑤ ₩211,000 감소

2. (주)세무의 20×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간접법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, (주)세무의 20×1년도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? (단,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.)

○ 당기순이익: ₩70,000	○ 법인세비용: ₩30,000
○ 이자비용: ₩27,000	○ 감가상각비: ₩40,000
○ 자산과 부채의 증감	

계정과목	기초금액	기말금액
매출채권(순액)	₩120,000	₩140,000
선급이자	50,000	53,000
재고자산	110,000	100,000
이연법인세자산	25,000	32,000
매입채무	100,000	130,000
선수금	80,000	70,000
미지급급여	210,000	230,000
당기법인세부채	30,000	25,000

- ① ₩98,000 ② ₩125,000 ③ ₩127,000
 ④ ₩130,000 ⑤ ₩138,000

3.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(주)세무는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. (주)세무의 20×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세무의 20×1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자산이 ₩56,000일 때, 20×1년도 기초재고 원가는?

구분	원가	판매가
기초재고	?	₩200,000
총매입액	₩530,000	712,000
매입할인	20,000	-
총매출액	-	830,000
매출환입	-	30,000
순인상액	-	35,000
순인하액	-	25,000
정상파손	-	5,000
비정상파손	14,000	22,000
종업원할인	-	15,000

- ① ₩106,000 ② ₩120,000 ③ ₩134,000 ④ ₩145,900 ⑤ ₩151,500

4. 20×1년 초 설립된 (주)세무는 단일상품만 판매하고 있고,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동평균법(계속기록법)을 적용하고 있으며, 기말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를 함께 확인한다. (주)세무의 20×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일자	적요	수량	단위당 원가
1월 8일	매입	300개	₩200
3월 2일	매출	250	-
6월 9일	매입	300	200
7월 13일	매출	250	-
12월 13일	매입	300	200

(주)세무의 20×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₩180이며, 실제 수량은 380개로 확인되었다. (주)세무는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,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. (주)세무의 20×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₩108,000일 때, 20×1년 말 재고자산의 정상감모수량은?

- ① 2개 ② 6개 ③ 10개 ④ 18개 ⑤ 20개

5. 법인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.
 ②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,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.
 ③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.
 ④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.
 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.

6.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다른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.
- ②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.
- ③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,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.
- ④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 원가를 조정한다.
- ⑤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의 영향은 고려하나,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.

7. 환율변동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.
- ②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③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.
- ④ 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,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.
- 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.

8. (주)세무는 20×1년 초 (주)한국과 건설계약(건설기간 3년, 총 계약수익 ₩650,000)을 체결하였다. (주)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.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,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(주)세무가 20×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?

구분	20×1년	20×2년	20×3년
당기발생원가	₩200,000	₩220,000	₩300,000
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	300,000	280,000	-

- ① ₩20,000 ② ₩60,000 ③ ₩90,000 ④ ₩110,000 ⑤ ₩130,000

9. (주)세무는 구매금액 ₩2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(주)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포인트 당 ₩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. (주)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하며,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- 20×1년 중에 (주)세무는 고객에게 총 ₩1,000,000을 판매하면서 500,000포인트를 제공하였다. 판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₩1,000,000이고 고정금액이다. (주)세무는 250,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₩0.5(합계 ₩250,000)으로 추정하였다.
- 20×1년 말 현재 100,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, (주)세무는 500,000포인트 중 250,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20×2년 말 현재 180,0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, (주)세무는 교환될 포인트 추정치를 새로 수정하여 500,000포인트 중 300,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(주)세무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×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?

- ① ₩40,000 ② ₩80,000 ③ ₩120,000 ④ ₩180,000 ⑤ ₩200,000

10. (주)세무는 20×1년 7월 1일 본사 건물(취득원가 ₩1,000,000, 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100,000, 연수합계법 상각)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. (주)세무는 20×3년 초 동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하였다. 동 건물은 20×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, 20×4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. 동 건물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20×2년 말	20×4년 말
순공정가치	₩180,000	₩145,000
사용가치	190,000	135,000

동 건물에 대한 (주)세무의 회계처리가 20×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 (단,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.)

- ① 영향없음 ② ₩60,000 감소 ③ ₩30,000 감소
 ④ ₩30,000 증가 ⑤ ₩60,000 증가

11. (주)세무는 20×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×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.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, (주)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20×1. 7. 1.	20×1. 10. 1.	20×1. 12. 1.	20×2. 7. 1.
공사대금 지출액	₩100,000	₩200,000	₩300,000	₩100,000

20×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₩100,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(상환의무 없음)으로 지출되었다. (주)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차입금	차입일	차입금액	상환일	연 이자율
특정차입금	20×1. 7. 1.	₩100,000	20×1. 12. 31.	8%
일반차입금 A	20×1. 1. 1.	500,000	20×2. 12. 31.	10%
일반차입금 B	20×1. 7. 1.	1,000,000	20×2. 6. 30.	6%

특정차입금 중 ₩20,000은 20×1년 7월 1일부터 20×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%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.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(주)세무가 20×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? (단,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,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.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.)

- ① ₩44,632 ② ₩52,632 ③ ₩55,211 ④ ₩59,211 ⑤ ₩80,000

12. (주)세무의 20×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₩100,000(1주당 액면금액 ₩100, 발행주식수 1,000주)이고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은 ₩200,000이며, 이익잉여금은 ₩100,000으로 자본총계는 ₩400,000이다. 20×1년 중에 발생한 (주)세무의 자기주식거래는 다음과 같다.

- 2월 2일: 자기주식 60주를 1주당 ₩600에 취득하였다.
- 3월 3일: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₩700에 처분하였다.
- 4월 4일: 자기주식 10주를 1주당 ₩500에 처분하였다.
- 9월 15일: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₩400에 처분하였다.
- 10월 30일: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.

(주)세무의 20×1년도 당기순이익은 ₩50,000이다. (주)세무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거래를 회계처리한다. (주)세무의 20×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계는?

- ① ₩341,000 ② ₩351,000 ③ ₩361,000 ④ ₩405,000 ⑤ ₩441,000

13. 다음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, 지그, 주형,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
- ㄴ.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, 장치, 제품, 공정,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, 제작, 시험하는 활동
- ㄷ. 재료, 장치, 제품, 공정,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
- ㄹ.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, 장치, 제품, 공정,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, 설계, 평가, 최종 선택하는 활동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4.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호텔을 소유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.
- ②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,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.
- ③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,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④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.
- 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,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.

15. 농림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.
- ②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인식한다.
- ③ 옥수수과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.
- ④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.
- ⑤ 원양어업, 천연림 벌채 등과 같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.

16. (주)세무의 20×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₩1,000,000(1주당 액면금액 ₩1,000)이고, 자기주식과 우선주자본금은 없다. (주)세무는 20×1년 4월 1일 무상증자를 20% 실시하였다. 20×1년도 회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- 기초 미행사 신주인수권: 600개(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)
- 신주인수권 행사가격: 1주당 ₩3,000
- 20×1년도 당기순이익: ₩1,200,000

(주)세무의 20×1년도 회석주당이익이 ₩800일 경우,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는?
(단, 20×1년 말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는 없었으며,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.)

- ① ₩3,000 ② ₩3,750 ③ ₩5,000 ④ ₩6,000 ⑤ ₩7,500

17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연속상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였다. 발행 시 시장이자율은 6%이며, 사채발행비 ₩26,422을 추가로 지출하였다. 동 사채와 관련하여 (주)세무는 20×1년도 이자비용으로 ₩101,243을 인식하였다. (주)세무는 사채의 60%를 20×3년 1월 1일 ₩270,000에 조기상환하였으며, 나머지 40%는 만기상환하였다. 동 사채에 대한 (주)세무의 회계처리가 20×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 (단, 유효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)

- 액면금액: ₩1,500,000
- 이자지급: 연 5%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
- 상 환: 20×1년부터 20×3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₩500,000씩 연속상환

기간	단일금액 ₩1의 현재가치		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	
	5%	6%	5%	6%
1	0.9524	0.9434	0.9524	0.9434
2	0.9070	0.8900	1.8954	1.8334
3	0.8638	0.8396	2.7232	2.6730

- ① 영향없음 ② ₩4,388 증가
 ③ ₩10,650 증가 ④ ₩15,279 증가
 ⑤ ₩24,388 증가

18. 회계정책,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, 새로운 정보의 획득,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.
- ②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.
- ③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,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.
-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⑤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,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.

19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사채(액면금액 ₩1,000,000, 표시이자율 연 8%, 만기 3년, 매년 말 이자지급)를 발행하였다. 20×1년 12월 31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×2년 1월 1일 재무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채의 조건을 변경(무이자로 20×5년 12월 31일 원금 ₩1,000,000 일시 상환)하였으며, 조건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. 시장이자율은 20×1년 초 10%이고, 20×2년 초 12%이다. 동 사채에 대한 (주)세무의 회계처리가 20×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 (단, 사채발행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,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.)

기간	단일금액 ₩1의 현재가치			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		
	8%	10%	12%	8%	10%	12%
1	0.9259	0.9091	0.8929	0.9259	0.9091	0.8929
2	0.8573	0.8265	0.7972	1.7833	1.7355	1.6901
3	0.7938	0.7513	0.7118	2.5771	2.4869	2.4018
4	0.7350	0.6830	0.6355	3.3121	3.1699	3.0374
5	0.6806	0.6209	0.5674	3.9927	3.7908	3.6048

- ① ₩206,017 증가 ② ₩213,977 증가 ③ ₩248,517 증가
- ④ ₩253,517 증가 ⑤ ₩282,277 증가

20.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, 이 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.
- ②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.
- ③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시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때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④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,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.
- 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.

21. 20×1년 2월 1일 영업을 개시한 (주)세무(12월말 결산법인)는 단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, 제품을 1대당 ₩3,000에 판매하고 있다. 판매수량은 20×1년에 500대, 20×2년에 1,000대이고,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. (주)세무는 동종 업계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내에 판매수량 대비 평균 3%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보증비용은 1대당 평균 ₩1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. (주)세무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, 충당부채로 인식한다. 제품의 품질보증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(주)세무가 20×2년도에 인식할 제품보증비(A)와 20×2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(B)는? (단,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.)

구분	20×1년 보증이행	20×2년 보증이행
20×1년 판매분	6대	7대
20×2년 판매분	-	12대

-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(A) | (B) | (A) | (B) |
| ① ₩1,500 | ₩1,800 | ② ₩2,000 | ₩1,800 |
| ③ ₩2,000 | ₩2,000 | ④ ₩3,000 | ₩2,000 |
| ⑤ ₩3,000 | ₩3,000 | | |

22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 (주)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(액면금액 ₩1,000,000, 표시이자율 연 10%, 만기 3년, 매년 말 이자지급)를 ₩951,980에 취득하여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.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%이고,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. 동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(주)세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.)

- (주)세무는 20×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, 20×1년 말 (주)한국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. (주)세무는 20×2년부터 동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₩900,000으로 추정하였다.
- (주)세무는 20×2년 말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며, 20×2년 말 (주)한국의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×3년 말에 이자 ₩70,000과 만기원금상환액 ₩900,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.
- 20×1년 말과 20×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₩680,000과 ₩840,000이다.

기간	단일금액 ₩1의 현재가치		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	
	10%	12%	10%	12%
1	0.9091	0.8929	0.9091	0.8929
2	0.8265	0.7972	1.7355	1.6901
3	0.7513	0.7118	2.4869	2.4018

- 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×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₩114,238이다.
- ②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해 20×1년도 당기순이익은 ₩134,500 감소한다.
- ③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20×2년도 당기순이익은 ₩148,633 증가한다.
- ④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으로 인하여 20×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₩116,215 감소한다.
- ⑤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20×1년 말 자본은 ₩171,980 감소한다.

23.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 (주)한국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20%를 ₩420,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. 20×1년 1월 1일 현재 (주)한국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₩2,000,000으로 장부금액과 일치하였다. (주)세무는 (주)한국의 보통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며, (주)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20×1년 말 (주)세무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(주)한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?

- 20×1년 10월 1일에 (주)세무는 (주)한국에게 원가 ₩35,000인 재고자산을 ₩50,000에 판매하였으며, (주)한국은 20×1년 말 현재 (주)세무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₩50,000 중 ₩20,000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.
- 20×1년도 (주)한국의 당기순이익은 ₩200,000이고, 기타포괄이익은 ₩20,000이다.

- ① ₩438,800 ② ₩442,800 ③ ₩455,800 ④ ₩458,000 ⑤ ₩462,800

24. 위험회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-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⑤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, 당기손익-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.

25. (주)세무는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합제품 A와 B, C를 주산물로 생산하며, 이 과정에서 부산물 X가 생산된다. 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와 중간제품 F, 부산물 X가 생산되며, 중간제품 F는 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결합제품 B와 C가 생산된다. 1공정과 2공정의 결합원가는 각각 ₩100,000과 ₩40,000이다. 결합제품 B와 C는 각각 3공정과 4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, 각 공정의 추가가공원가는 각각 ₩10,000과 ₩20,000이다.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한다. 생산·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	결합제품 A	결합제품 B	결합제품 C	부산물 X
단위당 판매가격(₩)	100	150	200	20
생산량(개)	1,600	1,000	800	200

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, 결합제품 B의 원가는? (단, 재공품은 없다.)

- ① ₩58,800 ② ₩60,000 ③ ₩63,200 ④ ₩65,500 ⑤ ₩67,600

26. (주)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·판매하고 있으며,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10%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최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×1년의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활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활동	원가동인(활동계측)	원가동인당 활동원가
작업준비	작업준비횟수(배치수준)	?
재료가공	기계작업시간(단위수준)	₩80
품질검사	생산량(단위수준)	60

-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,000개와 1,440개이다.
-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₩420,000과 ₩260,000이다.
-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.2시간과 1.5시간이다.

작업준비의 활동원가(총액)는?

- ① ₩174,400 ② ₩175,600 ③ ₩176,800 ④ ₩178,400 ⑤ ₩179,200

27. (주)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. 20×1년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- 당기의 기초제품 재고액은 ₩5,520이다.
- 기초재공품 수량은 300개(완성도 80%)이며, 기말재공품 수량은 250개(완성도 60%)이다.
- 당기 투입물량은 1,400개이며, 당기 완성품 수량은 1,300개이다.
- 품질검사는 완성도 70%시점에서 이루어지며,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%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,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한다.
-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₩50이다.

당기의 매출원가가 ₩63,840일 때, 기말제품 재고액은?

- ① ₩8,320 ② ₩8,430 ③ ₩8,560 ④ ₩8,650 ⑤ ₩8,780

28. (주)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, 20×1년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.

○ 제조간접원가 추정 예산식	$₩52,000 + ₩3.5 \times \text{직접노무시간}$
○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	4시간
○ 기준조업도(생산량)	2,600개
○ 실제생산량	2,400개
○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	₩9
○ 조업도차이	₩4,000(불리)
○ 능률차이	2,100(불리)

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?

- ① ₩81,000 ② ₩83,700 ③ ₩86,400 ④ ₩89,100 ⑤ ₩91,800

29. (주)세무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20×1년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40%를 예정배부하며,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. 당기의 실제 발생액은 직접재료원가 ₩98,000이고, 직접노무원가 ₩42,000이며, 제조간접원가 ₩56,000이다. 20×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	기초	기말
재공품	₩4,000	₩7,000
제품	16,000	12,000

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?

- ① ₩195,800 ② ₩196,000 ③ ₩196,400 ④ ₩197,000 ⑤ ₩199,800

30. (주)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,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. 모든 원가는 실제 발생액이며, 직접재료원가는 ₩38,000이고, 직접노무원가는 ₩32,000이다.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○ 기초재공품 수량	300개(전환원가 완성도 40%)
○ 당기 완성품 수량	1,200개
○ 기말재공품 수량	350개(전환원가 완성도 60%)
○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	₩65

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? (단, 공손 및 감손은 없다.)

- ① ₩51,850 ② ₩52,350 ③ ₩53,450 ④ ₩54,950 ⑤ ₩55,750

31. (주)세무는 보조부문 S1과 S2, 제조부문 P1과 P2를 운영하고 있다.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.

	보조부문		제조부문		합계
	S1	S2	P1	P2	
부문원가	₩80,000	₩160,000	-	-	
S1	30	60	?	?	150 시간
S2	400	200	380	220	1,200 kWh

보조부문원가는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한다.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가 ₩140,000인 경우,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?

- ① 27.6시간 ② 28.8시간 ③ 30.0시간 ④ 31.2시간 ⑤ 32.4시간

32. (주)세무는 제품 A와 B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.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, 20×1년 4월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.

활동	원가동인(시간당)	활동원가
작업준비	작업준비시간	₩136,800
조립작업	기계작업시간	276,000
품질검사	품질검사시간	11,970
합계		₩424,770

-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와 1,200개이다.
-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40개와 50개이다.
- 제품 A와 B의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다.
- 제품 A와 B의 제품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27분과 15분이다.
- 제품 A와 B의 품질검사는 2배치당 1회 이루어지며, 회당 검사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다.

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? (단, 재공품은 없다.)

- ① ₩180,810 ② ₩182,420 ③ ₩185,250 ④ ₩186,340 ⑤ ₩187,680

33. (주)세무는 20×1년 제품 A를 단위당 판매가격 ₩500에 1,000단위를 판매하였다. 연간 고정원가는 ₩60,000(감가상각비 ₩14,000 포함)이며,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300단위이다. (주)세무의 법인세율이 30%일 때,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수량은?

- ① 200단위 ② 220단위 ③ 240단위 ④ 260단위 ⑤ 280단위

34. (주)세무의 A사업부는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투자(투하)자본	₩500,000	가중평균자본비용	12%
세전영업이익	200,000	최저필수수익률	10%

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(EVA)는? (단, 법인세율은 25%이다.)

- ① ₩60,000 ② ₩70,000 ③ ₩80,000 ④ ₩90,000 ⑤ ₩100,000

35. (주)세무는 20×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, 단일 제품 A를 생산·판매하고 있다. 당기 생산량은 1,000단위이고, 단위당 판매가격은 ₩2,000이다. 제품의 생산·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단위당 직접재료원가	₩450	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	₩100
단위당 직접노무원가	200	총고정제조간접원가	40,000
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	50	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	10,000

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₩20,000이 많은 경우, 20×1년 제품 A의 기말재고수량은? (단, 기말재공품은 없다.)

- ① 350단위 ② 400단위 ③ 420단위 ④ 450단위 ⑤ 500단위

36. (주)세무의 20×1년 제품 A와 B의 생산·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제품 A	제품 B
단위당 판매가격	₩500	₩1,000
단위당 변동원가	300	500
단위당 기계작업시간	1시간	2시간
최대 판매가능수량	1,000단위	1,500단위

(주)세무의 20×1년 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이 3,400시간일 때, 최적의 제품배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?

- ① ₩800,000 ② ₩830,000 ③ ₩850,000 ④ ₩900,000 ⑤ ₩930,000

37. (주)세무의 20×1년 4월 제품 A의 매출액은 ₩16,000(단위당 판매가격 ₩100)이고, 총비용은 ₩20,000으로 ₩4,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. 공헌이익률은 25%이다. 4월과 5월의 원가구조는 동일하며, 5월의 목표판매수량을 200단위로 설정하고 광고선전비 ₩2,150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하였다. 5월의 세후목표이익 ₩1,000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당 판매가격은? (단, 법인세율은 20%이다.)

- ① ₩115 ② ₩122 ③ ₩132 ④ ₩142 ⑤ ₩155

38. (주)세무가 자가제조하고 있는 부품 A의 1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.

단위당 직접재료원가	₩300	감독자 급여	₩20,000
단위당 직접노무원가	200	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	50,000
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	100		

(주)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분석 중이다. (주)국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중 30%는 회피가능하고,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. (주)세무가 (주)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?

- ① ₩700 ② ₩750 ③ ₩800 ④ ₩850 ⑤ ₩950

39. (주)세무는 상품매매기업으로 20×1년 3분기의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.

	7월	8월	9월
매출액	₩12,000	₩15,000	₩18,000

(주)세무의 상품매입 중 40%는 현금매입, 60%는 외상매입이고, 외상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의 다음 달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. (주)세무의 예상 매출총이익률은 25%이다. 매월 말의 상품재고로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%를 보유할 때, (주)세무가 상품매입대금으로 20×1년 8월에 지급해야 할 현금지출액은?

- ① ₩9,625 ② ₩9,725 ③ ₩9,825 ④ ₩10,125 ⑤ ₩10,225

40. (주)세무는 20×1년 제품 B의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·판매하려고 한다. 제품 B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₩1,000,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₩5,000이고, 단위당 판매가격은 ₩2,000이다. (주)세무는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.

- 방안 1: 고정급여 ₩40,000을 지급

○ 방안 2: 고정급여 ₩20,000과 매출액의 20%를 성과급으로 지급

(주)세무는 제품 B와 유사한 제품 A의 과거 경험자료를 기초로 제품 B를 50단위와 60단위 판매할 확률을 각각 40%와 60%로 평가하였다. (주)세무가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, 그 기대영업이익은?

- ① ₩7,600 ② ₩8,000 ③ ₩8,600 ④ ₩9,600 ⑤ ₩11,000

민 법

4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·증명이 없더라도 법원(法院)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.
- ④ 관습법이 제정법상 임의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이 우선한다.
- ⑤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.

42.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,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
- ㄴ.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 경우, 그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.
- ㄷ.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.

- ① ㄱ
- ② ㄷ
- ③ ㄱ, ㄴ
- ④ ㄴ, ㄷ
- ⑤ ㄱ, ㄴ, ㄷ

43.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.
- ③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.
-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.
- ⑤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.

44.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.
- ③ 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추인하면 甲의 취소권은 소멸한다.
- ④ 甲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- ⑤ 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,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

45.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
-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.

46.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,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.
-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.
- ⑤ 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,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.

47. 甲은 생전처분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,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, 아직 A명의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甲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본재산인 X건물의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ㄴ. 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된다.
- ㄷ. 만약, 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,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- ① ㄱ ② ㄴ ③ ㄱ, ㄷ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48. 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.
-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.
- ③ 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④ A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⑤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,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.

49.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,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
- ②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.
- ③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·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하다.
-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,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한다.
- 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.

50.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,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.
- ②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, 그 이사에게 의결권은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.
-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,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.
- ⑤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,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51.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乙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.
- ② 乙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친다.
-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, 甲은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④ 甲의 정관에 乙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.
- ⑤ 乙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.

52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.
- ②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샷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.
- ③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(土石)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.
- ④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·채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.
- ⑤ 사람의 유골은 매장·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.

53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.
- ②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
- ③ 건물 내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는 종물이다.
- ④ ‘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’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.
- ⑤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.

54.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.
- ② 법인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,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.
- ③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.
- ④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경우,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- ⑤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매매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.

55.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유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ㄴ.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.
- ㄷ.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, 계약은 그 다른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.

- ① ㄱ ② ㄴ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56.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의사(醫師)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
- ②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
- ③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 받기로 한 약정
- ④ 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
-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

57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보험계약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.
- ③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불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.
- ④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.
- ⑤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.

58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부담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.
- ②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.
- ③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
-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.
-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
59.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
- ③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.
-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정한다.
-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60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.
-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.
- ③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.
- ④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인 경우,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.

61.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.
- ㄴ.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- ㄷ.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
- ① ㄱ ② ㄴ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62. 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.
- ㄴ.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.
- ㄷ.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,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.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63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, 그 최고는 이를 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.
- ⑤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.

64.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.
-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.
- ③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.
-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,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.

65.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
-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.
- ③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-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·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.
- ⑤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66.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제한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②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.
- ③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.
- ④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⑤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.

67.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.
- ②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.
- ③ 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.
-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.
-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68.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乙이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丙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.
- ㄴ. 乙은 丙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,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丙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다.
- ㄷ. 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,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.

- ① ㄴ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69.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- ②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.
- ③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,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.
- ④ 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.
- ⑤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.

70.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
- ②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
- ③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
- ④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
- 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후견인

71.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,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.
-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.
- ③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위 매매계약은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.
- ④ 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甲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, 乙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72.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.
-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.
- ③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.
-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,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.
- ⑤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
73.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.
- ②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.
-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,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
-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,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.

74.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기한 중 시기(始期)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?

- ① 도급 ② 상계 ③ 매매 ④ 위임 ⑤ 고용

75.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기간을 시(時)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.
②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한다.
③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.
④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. 4. 24.인 경우에 ‘선거일 전 3년간’은 2023. 4. 24. 00:00부터 2026. 4. 23. 24:00 사이를 말한다.
⑤ 기간을 월(月)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
76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.
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반환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.
④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.
⑤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.

77.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제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ㄴ.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.
ㄷ.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ㄹ.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예약완결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ㄴ, ㄷ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78. 甲은 2025. 5. 5.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.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,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.
- ②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,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.
- ③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,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- ④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.
- ⑤ 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,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.

79.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,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- ②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.
- ③ 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.
-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.
- ⑤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,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.

80.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계약해제권
-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
- ③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
-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
-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